



행복한 성장, 함께하는 화성오산교육

2023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계획



2023. 2.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오산교육지원센터)

차 례

I. 개요

1. 근거	1
2. 목적	1
3. 방침	1

II.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일정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일정	1
---------------------	---

III.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1. 특수교육대상자 정의	2
2.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유형	2
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흐름도	3

IV.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세부계획

1. 특수교육대상자 신규 신청 대상	4
2. 재배치 신청 대상	4
3. 신청기간 및 제출 서류	5

V. 행정사항

행정사항	8
------------	---

VI. 참고자료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9
2. 적응행동검사 [NISE-K·ABS] 온라인 평가방법 안내	10

2023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계획 주요 변경사항

목록	쪽	2023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계획 주요 변경사항
IV.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세부계획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V-3. 특수교육대상자 신규 신청 제출서류 내용 변경 및 추가 - (필수) 진단·평가 의뢰서 학부모 자필 작성 - (필수) 해당자 관련 제출서류 추가 · 발달지체,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학습장애, 의사소통장애 - 국립특수교육원 적응행동검사 NISE-K·ABS 결과지 · 학습장애 - 학습장애 검사 결과지(선별검사 제외) · 발달지체 - 발달지체 장애유형 재지정 확인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V-3. 요보호 신청 수신처 변경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V-3. 재배치 신청 제출서류 추가 - (필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사본 추가 - (필수) 보호자 확인서 추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V-3. 재취학 신청 제출서류 추가 - (필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사본 추가 - (필수) 보호자 확인서 추가
V. 행정사항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학적 검사 관련 안내 내용 추가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학생 발생 관련 안내 내용 추가
VI. 참고자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응행동검사 [NISE-K·ABS] 온라인 평가방법 안내 추가
※ 2023학년도 특수교육 대상자 의뢰 서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4> 보호자 확인서 내용 수정 추가 - 공동안내, 유치원, 특수학교 보호자 확인 내용 수정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5> 발달지체 장애유형 재지정 확인서 추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9> 특수교육대상자 유예(취학유예) 관련 안내 확인서 내용 추가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15> 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 재발급 신청서 신청 항목 추가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16>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 변경 신청서 추가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22>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입교신청서 신청유형 추가

2023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계획 [요약]

구분	세부내용		비고	
신청 대상	화성·오산지역의 유, 초,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자		p4	
신청 기간	신규 접수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차별 접수 기간에 접수	p4	
	건강장애 신규 및 재배치, 유예(면제), 재취학 등	- 수시로 접수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일정에 따라 심의 * 재배치 시 전학 예정일 최소 한 달 전 신청 또는 문의		
	배치 취소	- 배치 취소 서류 작성 후 바로 접수		
서류 수신처	유·초·중	- 수신처: ①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오산교육지원센터	p3	
	고	- 수신처: ①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오산교육지원센터 ②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서류 접수	신규		p4~6 p9~11	
	재배치	공통 안내	- 전학 예정일 최소 한 달 전 신청 또는 문의하여 재배치 의뢰 - 관내 및 관외 시 재배치 희망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 권장 - 재배치 신청 의뢰 제출 서류 p6 참고	p6
		관내 재배치	-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희망고 작성시 3희망까지 작성하며 3희망까지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유 기재(재배치 사유 명확히 기재) - 거주지 이전일 경우 거주지 이전 증빙자료 제출	
		관내 재배치 (학급 유형 변경)	① (일반학급 ↔ 특수학급, 복합 특수학급(전일제) ↔ 순회학급 ↔ 특수학교) - 재배치 신청서류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사본 제출 ② 특수학급 또는 순회학급 → 일반학급 - 재배치 신청서류 및 통합학급 적응기간 관찰 누가기록,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사본 제출	
	관외 재배치	- 관내 재배치 서류와 동일하나 전입 주소지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 후 제출 권장		
유예(취학유예) 및 면제, 재취학	-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유학, 정당한 해외출국,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사망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 처리 - 유예나 면제된 자가 재취학 시 학년은 학교장이 결정 - 유예, 면제, 재취학 신청 의뢰 제출 서류 p7 참고 *유예기간 만료 1개월 전 학교에서 학부모님께 안내하여 재취학신청서 또는 유예 신청서 제출(유예 후 재취학하는 경우 유예 당시의 원적 학교와 다른 학교로 배치 받을 수 있음)	p7		
취소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취소	- 특수교육대상자 취소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이며, 서류 접수 시 취소 신청서에 기재된 날짜로 취소됨 (유치원의 경우 퇴원 예정일 기재)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취소 서류 p7 참고	p7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 취소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 신청 후 의뢰 취소할 경우 제출 - 진단·평가 의뢰 취소 서류 p7 참고		
결과 안내	- 특수교육대상자 신규 및 재배치 등 서류접수처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드시 보호자에게 안내 - 배치결과 통지서 원본은 학부모 제공, 사본은 학교에 반드시 보관		p8	
행정 사항	- 배치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배치 처리대장 비치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분실 시 공문으로 재발급 요청 -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심리학적 검사는 학교 급별 1회에 한함(배치취소 및 검사 후 의뢰취소도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취소 후 6개월 이내 재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배치 관련 공문을 학적 담당자에게 공람 - 유급학생이 발생할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유선연락		p8	

2023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계획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오산교육지원센터

I 개요

1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36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3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2 목적

- 검사 및 관찰, 면담 등을 통한 결과 분석으로 장애 및 장애가능성 조기발견
-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진단평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적격성 여부 판별
- 특수교육대상자의 각급학교 선정·배치를 위한 정보제공

3 방침

- 특수교원, 의사, 언어재활사 등으로 진단평가팀 구성·운영
- 보호자 의견 및 관련 자료,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II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일정

회차	서류접수기간	진단평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비고
3차	2.6.(월)~2.10.(금)	3.16.(목) 15:30	3.23.(목) 15:00	서류접수기간 마감 후 접수 공문은 다음차수에서 진단평가 실시
4차	3.13.(월)~3.17.(금)	4.13.(목) 15:30	4.20.(목) 15:00	
5차	4.10.(월)~4.14.(금)	5.18.(목) 15:30	5.23.(화) 15:00	
6차	5.8.(월)~5.12.(금)	6.15.(목) 15:30	6.22.(목) 15:00	
7차	6.12.(월)~6.16.(금)	7.6.(목) 15:30	7.20.(목) 15:00	
8차	7.10.(월)~7.14.(금)	8.17.(목) 15:30	8.24.(목) 15:00	
9차	8.11.(금)~8.18.(금)	9.14.(목) 15:30	9.19.(화) 15:00	
10차	9.11.(월)~9.15.(금)	10.19.(목) 15:30	10.24.(화) 15:00	
11차	10.10.(화)~10.16.(월)	11.9.(목) 15:30	11.21.(화) 15:00	
12차	11.13.(월)~11.17.(금)	12.14.(목) 15:30	12.21.(목) 15:00	
24년 1차	12.11.(월)~12.15.(금)	2024.1.16.(화) 15:30	2024.1.23.(화) 15:00	
2차	2024.1.8.(월)~1.12.(금)	2024.2.15.(목) 15:30	2024.2.22.(목) 15:00	
3차	2024.2.13.(화)~2.19.(월)	2024.3.14.(목) 15:30	2024.3.21.(목) 15:00	

※상기일정은 우리교육지원청 실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4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배치 계획은 별도 시행 예정

1 특수교육대상자 정의 (법 제15조)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유형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와는 상관없이 하루 종일 일반 또래와 함께 일반 학급에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 순회학급

-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
-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순회교육 대상으로 함

- 순회교육 대상자는 ①통학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여도 학교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없거나, ②이동 곤란 등 특별한 사유로 가정,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생활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선정

※ 건강장애, 요보호대상자 등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은 일반학급 배치

■ 복합 특수학급(전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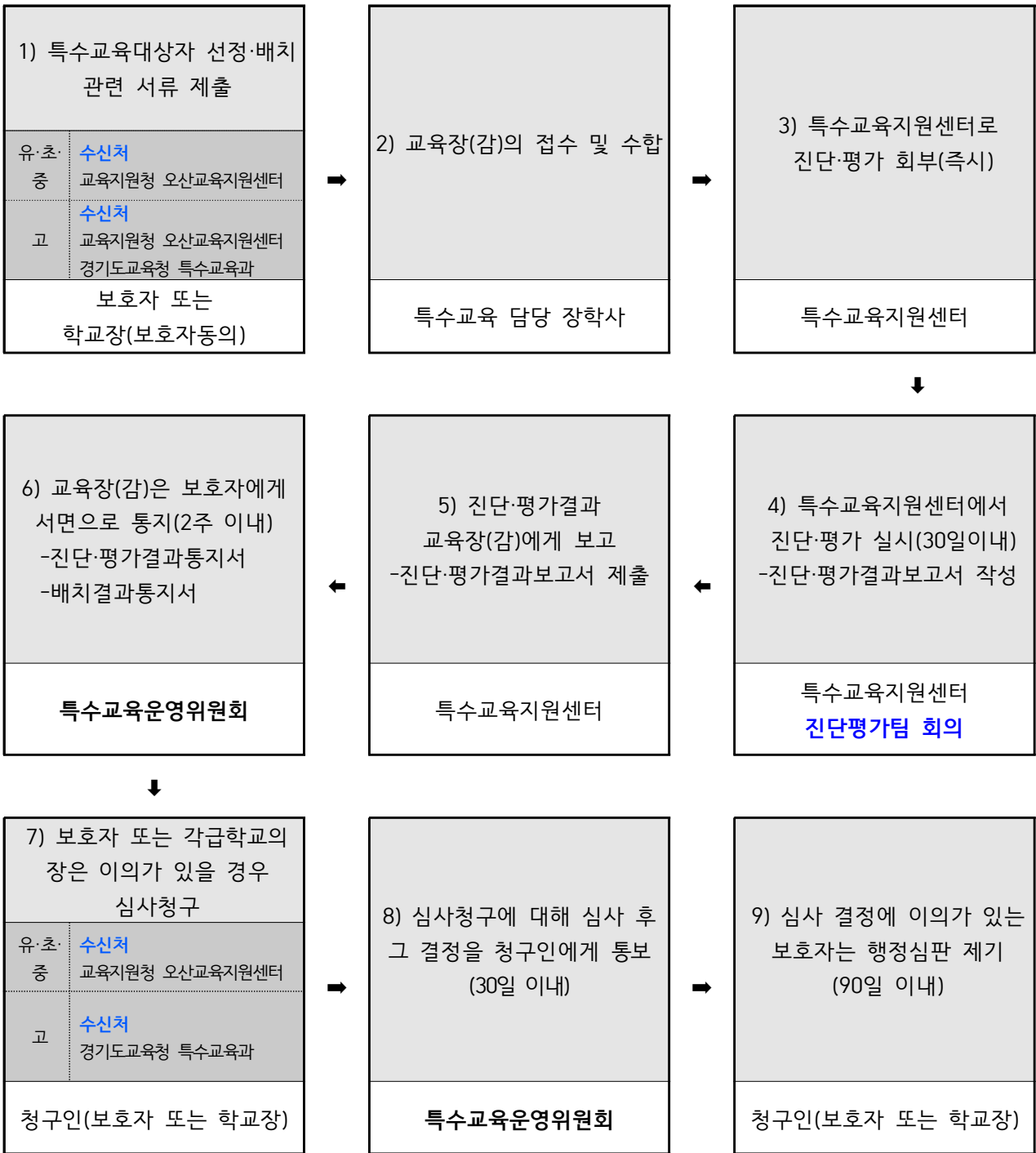
- 일반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전일제 형태의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특수학급
- 경기도 교육청에서 설치한 새로운 형태의 특수학급이며, 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등 전문적 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특수학급
- 2023. 3. 1. 기준 화성·오산 내에서는 3개교 운영(화성 효행초, 오산 성산초, 화성 능동중)

■ 특수학교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일반학교와 분리된 형태로 설립된 교육시설
-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준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의 과정을 교육

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흐름도 (법 16조)



※ 심사청구 방법

- 1)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이의가 있을 때, 소속 담임교사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와 상담 실시
- 2) 소속교에서는 [심사청구서<서식13>](#), 기타입증자료<의사진단서, 검사 보고서, 의견서 등>을 스캔하여 제출
(소속이 없는 경우 접수교에서 신청)
- 3) 소속교 및 접수교에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결과를 청구인(보호자 또는 학교장)에게 통보

1 특수교육대상자 신규 신청 대상

화성오산지역의 유, 초,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자

2 재배치 신청 대상

가. 배치교 변경

- 2023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이며 거주지 근거리 희망 및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재배치를 희망하는 학생

나. 학급유형 변경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복합 특수학급(전일제), 순회학급, 특수학교로 재배치를 희망하는 학생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구분	서류제출기간	비고
신규 진단평가 의뢰 (건강장애 제외)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차별 접수 기간 (계획서 1쪽 참고)	※서류접수기간에만 접수
건강장애 진단평가 의뢰 및 재배치, 유예(면제), 재취학 등	수시로 접수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일정에 따라 심의	
배치 취소	배치 취소 서류 작성 후 바로 접수	※배치 취소 서류 작성일이 취소일로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보고사항

나. 신청방법

구분	제출방법 및 접수처	비고		
신규	장애영아학급	• 화성오산특수교육지원센터 현장 접수	수신처: 오산교육 지원센터 (비공개, 6호)	
	유치원	공립유치원		①공립유치원 재원생 - 소속 공립유치원 방문 접수 후 업무관리시스템 제출 ②무소속 또는 어린이집 재원생 - 거주지 인근 공립유치원 방문 접수 후 업무관리시스템 제출 또는 화성오산특수교육지원센터 현장 접수
		사립유치원		①사립유치원 재원생 - 소속 사립유치원 방문 접수 후 업무관리시스템 제출 ②무소속 또는 어린이집 재원생 - 배치 희망 사립유치원 방문 접수 후 업무관리시스템 제출
	초·중·고등학교 재배치	• 소속교에 신청서류 접수 및 업무관리시스템 제출 • 소속교에 신청서류 접수 및 업무관리시스템 제출		
- 서류 첨부 시 원본 스캔하여 학생별 pdf 파일 1개로 작성 제출 (파일 제목에 학생이름 기재 금지) * 의뢰서 및 기초조사카드, 검사보고서, 복지카드 등 관련 서류 모두 pdf 파일 1개로 스캔				

다. 신규 신청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규	<p>①(필수)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서식1> - 학부모 자필 작성 필수(자필 작성이 아닐 경우 접수 불가) - 희망교 작성 시 3희망까지 작성 (3희망까지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유기재)</p> <p>②(필수)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 카드<서식2> ③(필수)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3> ④(필수)보호자 확인서<서식4> ⑤(필수)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뒷자리 삭제 또는 음영처리 후 제출) ⑥(필수)국립특수교육원 적응행동검사 NISE-K·ABS 결과지(담임교사 실시) - 발달지체,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학습장애, 의사소통장애 신청자만 해당 ⑦(필수)해당자 관련 제출 서류(최근 6개월 이내 서류) - 대상: 의사소통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선정 희망 학생 중 복지카드 미소지자 및 경증(4급 이하) 소지자 또는 학습장애 선정 희망 학생</p> <table border="1" data-bbox="272 772 1404 907"> <thead> <tr> <th>의사소통</th> <th>시각장애</th> <th>청각장애</th> <th>지체장애</th> <th>학습장애</th> </tr> </thead> <tbody> <tr> <td>언어검사결과지 (SELSI, PRES, REVT 등)</td> <td>교정시력 검사결과지</td> <td>교정청력 검사결과지</td> <td>의사 진단서</td> <td>학습장애 진단평가 검사결과지 (선별검사 아님)</td> </tr> </tbody> </table> <p>⑧(초등필수)발달지체 선정 희망 학생은 발달지체 장애유형 재지정 확인서 제출<서식5> ⑨기타(소지자 및 제출 희망)</p> <div data-bbox="277 1012 1404 118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앞·뒷면 사본(교감 원본대조필) 또는 장애인증명서 원본 ■ 의사진단서, 심리검사 결과보고서 소지자 : 진단명, 검사명과 검사결과가 명시되어야 함(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담임교사(보호자) 의견서<서식12> </div>	의사소통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학습장애	언어검사결과지 (SELSI, PRES, REVT 등)	교정시력 검사결과지	교정청력 검사결과지	의사 진단서	학습장애 진단평가 검사결과지 (선별검사 아님)
의사소통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학습장애							
언어검사결과지 (SELSI, PRES, REVT 등)	교정시력 검사결과지	교정청력 검사결과지	의사 진단서	학습장애 진단평가 검사결과지 (선별검사 아님)							
건강장애	<p>①(필수)신규 의뢰서류 ①~⑤ 동일 ②(필수)원격수업 입교 신청서<서식19, 서식22> ③(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1, 서식24>(내부결재 후 학교 보관) ④(필수)학교생활기록부 사본(출결확인용) ⑤(필수)진단서(구체적 병명 및 치료기간 3개월 이상 명시) ⑥(필수)담임교사(학부모) 의견서<서식12> ⑦유의 사항</p> <div data-bbox="277 1505 1414 169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또는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 - 건강장애 선정되기 전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선 교육 지원 가능 - 선교육 희망 시 유·초·중→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오산교육지원센터로 공문발송 고등학교→ 오산교육지원센터 및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로 공문발송 - 병원학교 입교 시에도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 필요 </div>										
요보호	<div data-bbox="277 1733 1414 181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요보호대상자(※특수교육대상학생 아님) -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3개월 이상)이 예상되는 학생</p> </div> <p>①(필수)원격수업 입교 신청서<서식19, 서식22> ②(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1, 서식24>(내부결재 후 학교 보관) ③(필수)진단서(구체적 병명 및 치료기간 3개월 이상 명시) ④(필수)학교생활기록부 사본(출결확인용) ⑤담임교사(보호자) 의견서<서식12> ※ 수신처: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오산교육지원센터</p>										

	서식 1,2,3,4	서식 12	서식 19, 22	서식 21, 24	NISE- K-ABS	주민등록 등본	언어검사 결과지	학습장애 진단평가 검사 결과지	심리검사 보고서	의사 진단서	교정시력/ 교정청력 검사결과지	생활기록부 (출결 확인용)
발달 지체	●	○			●	●	○		○	○	(초등) 발달지체 재지정 확인서	
지적 장애	●	○			●	●			○	○		
정서행동 장애	●	○			●	●			○	○		
자폐성 장애	●	○			●	●			○	○		
학습 장애	●	○			●	●		●	○	○		
의사소통 장애	●	○			●	●	●		○	○		
시각 장애	●	○				●			○	○	●	
청각 장애	●	○				●			○	○	●	
지체 장애	●	○				●			○	●		
건강 장애	●	●	●	●		●				●		●

라. 재배치 신청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재배치	<p>공통</p> <p>①(필수)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서식6> - 희망교 작성 시 3희망까지 작성 (3지망까지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유 기재) ②(필수)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사본 ③(필수)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사본 ④(필수)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3> ⑤(필수)보호자 확인서<서식4>(학교 변경이 없을 경우 제외) ⑥(필수)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뒷자리 삭제 또는 음영처리 후 제출) ⑦담임교사(보호자) 의견서<서식12></p>
	<p>학급 유형 변경</p> <p>(일반학급 ↔ 특수학급, 복합 특수학급(전일제) ↔ 순회학급 ↔ 특수학교)</p> <p>①(필수)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사본(재배치 사유를 검토하여 배치변경에 대한 최종 의견) ②(특수학급→일반학급 신청 시) 통합학급 적응기간 관찰 누가기록(자유양식, 매일 누가기록)</p>
	<p>관내</p> <p>거주지 이전 재배치 (화성오산지역 내 A학교↔B학교)</p> <p>①전입신고 이전일 경우 매매·전월세·분양 계약서 등의 변경된 주소지 관련 서류 ②계약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서류 ※전학 예정일 최소 한 달 전 신청 또는 문의</p>
	<p>관외</p> <p>관외 재배치 (화성오산 이외 지역 A학교↔B학교)</p> <p>※관내 재배치 제출 서류와 동일 ※전입 주소지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희망교 및 제출서류 등) ※전학 예정일 최소 한 달 전 신청 또는 문의</p>
<p>※ 원본이 아닌 사본 제출 서류에는 교(원)감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복지카드 사본,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등)</p>	

마. 유예(취학유예) 및 면제, 재취학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예 (취학 유예)	①특수교육대상자 유예(취학유예) 승인 신청서<서식8> ②특수교육대상자 유예(취학유예) 관련 안내 확인서<서식9> ③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3> ④담임교사(보호자) 의견서<서식12> ⑤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사본 ⑥기타서류: - 질병: 진단서 - 유학: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면제	<질병, 유학으로 인한 면제 신청> ①특수교육대상자 면제 승인 신청서<서식10> ②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3> ③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사본 ④기타서류: - 질병: 진단서 - 유학, 정당한 해외출국: 해외파견공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사망으로 인한 면제 신청> ①사망확인서류 ※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이민, 유학, 정당한 해외출국,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사망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처리
재취학	①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신청서<서식11> ②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3> ③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사본 ④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사본 ⑤보호자 확인서<서식4> ⑥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⑦기타(귀국학생의 경우) - 성적증명서,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입국사실증명서 ※ 유예 후 재취학하는 경우 유예 당시의 원적 학교와 다른 학교로 배치받을 수 있음 ※ 면제나 유예된 자의 재취학 시 학년은 학교장이 결정함 ※ 유예기간 만료 1개월 전 학교에서 학부모님께 안내하여 재취학신청서 또는 유예 신청서 제출

바. 배치 취소 및 의뢰 취소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배치 취소	①특수교육대상자 진단·배치 취소 신청서<서식6> ②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 취소 후 번복이 안 되며 취소 후 6개월 이내 재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 취소의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이며, 서류접수 시 취소 신청서에 기재된 날짜로 취소됨 (유치원의 경우 퇴원 예정일 기재) ※건강장애는 원격수업 퇴교 신청서로 배치취소를 갈음함 수신처: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오산교육지원센터 (동시 지정)
의뢰 취소	①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 취소 신청서<서식17>

가. 신청서류 첨부 시 원본 스캔하여 학생별 pdf파일 1개로 작성 제출

- 나. 서류접수처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드시 보호자에게 안내
- 다. 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 원본은 학부모 제공, 사본은 학교에 반드시 보관
- 라. 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 분실 시 공문으로 재발급 요청<서식15>
- 마. 특수학교 재배치 희망 시 특수학교 학급당 배치 인원수 확인 후 신청
 - ※ 화성오산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특수학교(급)인원수정보 공시 참고

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심리학적 검사는 학교 급별 1회에 한함**※ 배치취소 및 검사 후 의뢰취소도 해당**

- 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후 6개월 이내 재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 아. 배치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처리대장 비치<서식25>
- 자.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배치 관련 공문을 학적 담당자에게 공람
(학적요청, 나이스 반영 등의 행정사항이 이루어지도록 안내)
- 차. 기타증빙자료(교정시력·교정청력 검사결과, 의사 진단서 등) 제출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발급비용 청구서 및 검사명이 적힌 지출증빙서류 첨부 시 최대 2만원 실비 지급<서식18>
- 카. 유급학생이 발생할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유선연락 (031-8054-7464)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시행령 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①만성질환으로 인하여 ②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③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병명에 따른 선정이 아니라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개별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 만성질환으로 관리가 필요하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이 가능하고, 특수교육 지원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님(ADHD, 우울증 등은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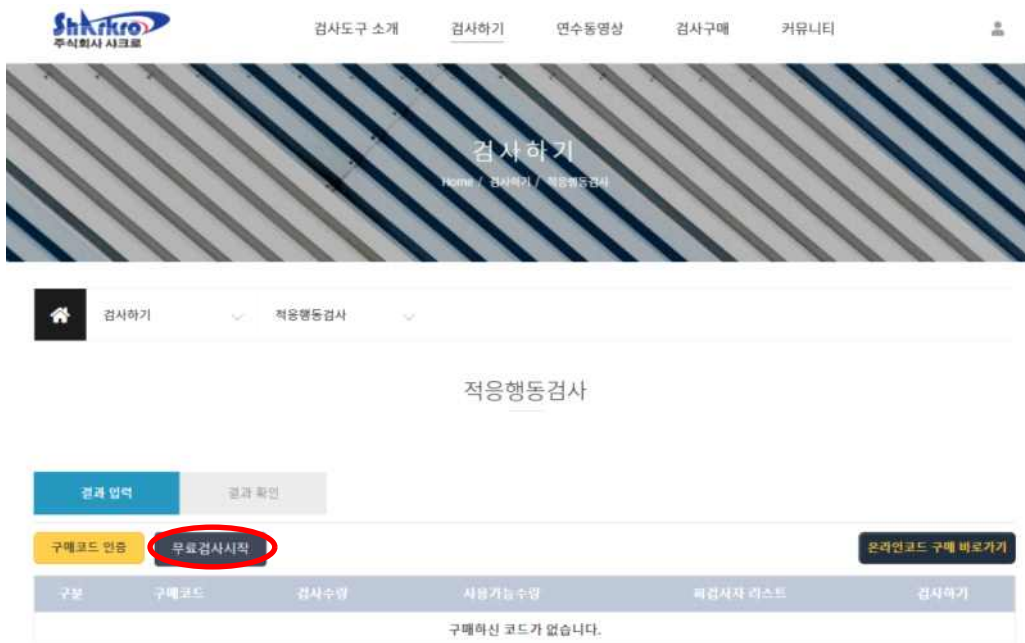
※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도 상급학교 진학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선정

2 적응행동검사 [NISE-K·ABS] 온라인 평가 방법 안내

- ① 상단 클릭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https://www.nise-test.com/>)
- ② 적응행동검사 > 검사하기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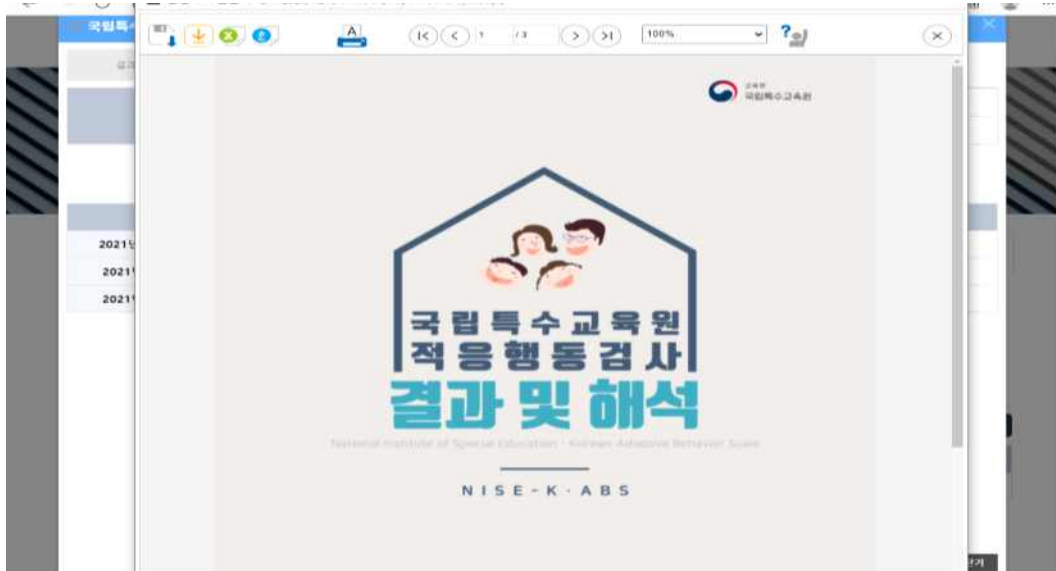


- ③ 무료검사시작 클릭



- ④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검사일 등 기본정보 입력
유아용(만24개월~77개월)/초중등용(만6세~만18세) 설정한 뒤 온라인 검사 실시

⑤ 결과 및 해석 > 왼쪽 상단 PDF파일(학교명_학생명)으로 저장



⑥ 결과 확인 에서 실시한 모든 검사 확인 가능

검사명	배검사자	진행률	결과보기	검사자	삭제
2021년 11월 10일	김은리 / 6세 0개월 / 여	완료	결과보기	메모 입력	검사삭제
2021년 11월 9일	김은리 / 1세 0개월 / 여	0%	검사하기	메모 입력	검사삭제